##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332 발의연월일: 2022. 4. 19.

발 의 자 : 홍익표 · 김영배 · 김진표

박성준 • 오영환 • 윤영찬

전용기 · 전혜숙 · 정태호

홍성국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지 또는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액상당액과 종합부동산 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이 직전 연도의해당 재산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징수하도록 하여 납세자인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지나친 세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의 총세액상당액을 계산할 때 한도 범위 내에서 실제로 납부한 금액이 아닌 원산출세액을 적용하고 있어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세부담 상한의 실질적인 한도가 1.5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세부담의 상한에 대한 기준을 원산출세액이 아닌 관할세무서 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실제로 부과·징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하 고, 세부담 상한의 비율 또한 100분의 110으로 하향 조정하여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증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0조및 제15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익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53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 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제 호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과된"을 "실제로 부과·징수된"으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의 100분의 110"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부과된"을 "실제로 부과·징수된"으로, "100분의 150"을 "100분의 11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과된"을 "실제로 부과·징수된"으로, "100분의 150"을 "100분의 110"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부담의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	
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	
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	
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	
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	
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	
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	
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	
에 <u>부과된</u> 주택에 대한 총세액	<u>실제로 부과·징수된</u>
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u>세액에</u>	<u>세액의</u>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100분의 110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	
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	
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9조제1항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 2. 제9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300

제15조(세부담의 상한) ① 종합부 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 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 산세액상당액(신탁토지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 산과세대상인 해당 토지에 대 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과 토지분 종 합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 하 이 조에서 "종합합산과세대 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 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 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 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

,
<u>&lt;삭 제&gt;</u>
<u>&lt;삭 제&gt;</u>
제15조(세부담의 상한) ①
<u>실제로</u> 부과·징수된
100분의 110

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 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신탁토 지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 자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해당 토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별도 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 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 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 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 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②
실제로 부과·징수된
<u>100</u>
<u> 분의 110</u>

己	어느	것으로	보다
三	放亡	クニエ	七十

-----